

2025학년도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계획



전라남도교육청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안 전 복 지 과)

2025학년도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계획(요약)

☑ 주요내용

- (추진근거)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제5803호, 2023. 8. 3.)
-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인한 3자녀 이상 가정의 초·중·고 학생
단, **중학생 체험학습비는 2자녀 가정 학생도 지원**
- (지원범위) 전남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 (지원내용)

구분	지원항목	지원금액	세부 기준
초등학생	신학기준비물구입비	1인당 10만원	- 사용범위: 책가방, 신발, 일상의류 구입 - 연 1회 정액 지급
중학생	신학기준비물구입비	1인당 10만원	- 사용범위: 책가방, 신발, 일상의류 구입 - 연 1회 정액 지급
	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포함)	실비 (연간 30만원 범위)	- 학부모가 실제 학교회계로 납부하는 경비
고등학생	신학기준비물구입비	1인당 20만원	- 사용범위: 책가방, 신발, 일상의류 구입 - 연 1회 정액 지급
	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포함)	실비 (연간 30만원 범위)	- 중학생 체험학습비 지원기준과 동일
	기숙사운영비	실비	- 기숙사 급식비를 제외한 기숙사 운영비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실비	- 4자녀 이상 가정의 고등학생 - 무상교육 제외교만 해당

*체험학습비: 학교기본운영비 통합 지원 사항을 제외한 **수익자부담경비**(연 30만원 범위)

**고교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무상교육 제외교)

☑ 전년도 대비 변동 사항

- 지원범위 확대
 - 각종학교 추가
- 다자녀 체험학습비 지원 요건 체계화
 - 정기적·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학교 일반 교육과정 활동 제외
- 중·고등학교 체험학습비 지원금 상한선 조정
 - 수익자 부담금 35만원 이내 → 30만원 이내
 - 현장체험통합지원사업으로 기본운영비에 통합 지원됨에 따른 조정(학생당 @25만원)

2025학년도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계획

I 목적

-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 학교교육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II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부담의 경감)
-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제5803호 2023.8.3.)

III 추진 경과

- 2015년 : 5자녀 이상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2016년 : 5자녀 이상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2016년부터 중학교 체험학습비 도청 보조금 지원
- 2017~2018년 : 4자녀 이상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2019~2020년 : 3자녀 이상 중학생 및 4자녀 이상 고등학생 지원
- 2021년 : 3자녀 이상 중·고등학생 지원
- 2022년 : 3자녀 이상 초·중·고등학생 지원
- 2023년 :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 2024년 : 중학생 체험학습비 2자녀로 지원 확대

IV 지원 계획

□ 지원 대상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인한 3자녀 이상 가정의 초·중·고 학생

단, 중학생 체험학습비는 2자녀 가정 학생도 지원

- 전남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는 만 19세 미만인 학생* *2007년 1월 이후 출생자
- 출생순서 및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첫째 자녀부터 지원)
- 학생의 형제자매 중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 지원 내용

구분	지원항목	지원금액	세부 기준
초등학생	신학기준비물구입비	1인당 10만원	- 사용범위: 책가방, 신발, 일상의류 구입 - 연 1회 정액 지급
중학생	신학기준비물구입비	1인당 10만원	- 사용범위: 책가방, 신발, 일상의류 구입 - 연 1회 정액 지급
	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포함)	실비 (연간 30만원 범위)	- 학부모가 실제 학교회계로 납부하는 경비
고등학생	신학기준비물구입비	1인당 20만원	- 사용범위: 책가방, 신발, 일상의류 구입 - 연 1회 정액 지급
	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포함)	실비 (연간 30만원 범위)	- 중학생 체험학습비 지원기준과 동일
	기숙사운영비	실비	- 기숙사 급식비를 제외한 기숙사 운영비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실비	- 4자녀 이상 가정의 고등학생 - 무상교육 제외교만 해당

○ 다자녀 체험학습비 지원 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년(학급) 단위 단체로 실시하는 체험학습
※ 학생 일부 선정, 개별 체험학습은 해당되지 않음
- 2) 학교기본운영비 통합(수학여행·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지원 예산으로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개인부담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
- 3) 학생 가정에서 학교회계로 납부하는 수익자부담경비(자부담)
- 4) 정기적·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학교 일반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활동 제외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 제2조(정의)
 2. “현장체험학습”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서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등을 말한다.
-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 조례」 제2조(정의)
 2. “수익자부담경비”란 입학금 및 수업료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 지원 방법

○ (신청안내) 가정통신문 안내

- 학교에서 다자녀 교육비 지원 안내문 및 신청 서식【붙임 1, 2】발송
- 알림앱 공지, 문자메시지 발송, 홈페이지 탑재 등 사업 홍보
- 학부모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필요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증빙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 권장[총무과-70276(2023.7.13.)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사용 철저 안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생년월일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표기된 증명서 발급

※ 연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월부터 지원받는 항목이 있으므로, 3월에 신청하도록 안내

○ (대상자 결정) 학교는 학부모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기준*에 따라 다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자 결정 (*참고1. 다자녀 교육비 지원 기준)

○ (예산교부) 학교별 예산 소요액 신청에 따라 학교회계전출금 교부

○ (항목별 지원)

① 신학기준비물구입비

- 지급방법: **개인 계좌 입금**(신청된 학부모 계좌 또는 스쿨뱅킹 계좌)
- 사용범위: 책가방, 신발, 일상의류 구입

②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포함)

- 학급 또는 학년 단위 체험학습에 참가하는 전체 학생에 대한 **개인부담금 징수 시** 다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다자녀 지원금으로 처리

③ 기숙사운영비, 고교 학비

- 다자녀 교육비 지원금을 기숙사 관리 예산(시설유지, 비품구입 등)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지원 절차

사업 홍보	신청/접수	대상자 결정	예산신청/교부	지원/관리
학교	학부모/학교	학교	학교/교육청	학교
다자녀 교육비 지원 안내 홍보 - 가정통신문, 문자 발송	▶ 다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교로 제출	▶ 다자녀 지원 대상여부 서류 검토·확인	▶ 학교별 소요액 신청에 따른 지원예산 교부	▶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학생에게 지원
2월말~3월초	3월(집중신청) / 연중 수시	3월(집중신청) / 연중 수시	분기별	연중

□ 유의사항

- 법령, 조례, 지자체, 타 사업 등에서 다자녀 교육비 지원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지원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다자녀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 다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학교에서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비밀 엄수 및 자료 관리 철저
- 사후처리 문자 안내 (대상자 선정 결과, 계좌 지급완료 등)
- 다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전출·전입 시 고려사항
 - 도내 전출 시 반드시 다자녀 교육비 지원 내역을 통보 (전출교 → 전입교)
 - 전입교는 전출교의 기 지원내역 확인 후 항목별 지원기준 범위 내 지원
 - 전입교는 전출교의 통보 자료로 다자녀 교육비 신청 같음(신청서등장구불필요)
 -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전출자는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참고1. 다자녀 교육비 지원 기준

- 출생순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자녀 수 기준에 충족 시 지원
 - 형제자매 중 미취학이나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되며, 학부모가 타 지역(예시: 서울 등)에 거주하여도 지원
 - 재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 수가 기준에 충족 시 지원(증빙 서류에 해당 자녀 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신청 기간: 연중 수시(3월: 집중 신청 기간)
 - 지원 기간
 - 신학기준비물구입비, 체험학습비: 2025. 3. 1. ~ 2025. 12. 31.
 - 기숙사운영비, 고교 학비: 2025. 3. 1. ~ 2026. 2. 28.
 - 다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자 확정(2025. 3월) 이후 연중 신규 지원대상자 추가 발생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
- ※ 적용 사례: 신청 지연, 타 시·도 전입, 자녀수 증가 등

지원항목	지원기간
신학기준비물구입비	연도 내 지원기준 충족 시 지원
체험학습비	학년도 중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하는 활동에 한하여 지원
기숙사운영비	학년도 중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고교 학비	학년도 중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다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자 확정(2025. 3월) 이후 자녀수 감소로 지원기준 미충족 시 해당 학년도(연도) 말까지는 계속 지원
- 다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도내 전학하는 경우
 - 도내 전출 시 반드시 다자녀 교육비 지원 내역을 통보 (전출교 → 전입교)
 - 전입교는 전출교의 기 지원내역 확인 후 항목별 지원기준 범위 내 지원
 - 전입교는 전출교의 통보 자료로 다자녀 교육비 신청 같음(신청서 등 징구 불필요)
 -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전출자는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 자퇴·퇴학 등 학업 중단자는 자퇴·퇴학하는 날까지 지원
- 신학기준비물구입비는 학적 변동에 상관없이 연 1회 정액 지급(일할계산하지 않음)

□ 사업 홍보 (학교)

-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SMS), 학교 홈페이지, 알림앱 공지 등 다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적극 홍보

- 다자녀 교육비 지원 안내, 안내문 발송 및 서류접수 (3월초)

✉ 문자메시지 예시

전남교육청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으로 지원 내용을 안내하여 3월○일 ~ ○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학교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요액 신청

- (상반기) **신학기준비물구입비, 기숙사운영비(1~3분기), 고교학비 신청**

구분	제출기관	제출기한	제출자료
학교	초등학교,중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25. 3. 13.(목)	서식1
	고등학교,특수학교 → 도교육청 안전복지과	'25. 3. 13.(목)	서식2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안전복지과	'25. 3. 19.(수)	초·중 취합자료

- (하반기) 중·고 체험학습비, 기숙사운영비(4분기), 그 외 항목 추가 소요액 신청

※ 하반기 제출 일정 및 서식은 추후 별도 안내

□ 지원금 정산 (세부사항 추후 별도 안내)

- 중학교 체험학습비: 집행잔액 전액 반납

※ 중학교 다자녀 교육비 지원은 전남도청 예산보조 사업으로 집행잔액 전액 반납

- 그 외 지원항목: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처리 기준에 따라 일괄 반납

1.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문 예시
2.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서식
3. 학교 다자녀 교육비 지원예산 소요액 신청서 제출 서식(별첨)
4.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확인서
5.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6. 교육지원청 다자녀 교육비 지원 담당부서 현황

2025학년도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전남교육청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인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	- 신학기준비물구입비	- 신학기준비물구입비 - 체험학습비	- 신학기준비물구입비 - 체험학습비 - 기숙사운영비
	※ 신학기준비물구입비(연1회 1인당 초·중: 10만원, 고: 20만원), 체험학습비(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경비, 연간 중 30만원 이내 실비), 기숙사운영비(실비, 기숙사급식비 제외)		
	※ 중학생 체험학습비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부터 지원 ※ 형제자매 중 성인 자녀 및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됨		

※ 4자녀 이상 가정의 고등학생 학비 지원 (광양제철고만 해당)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신청서 제출처: 재학 중인 학교】

구 분	내 용
신청기간	2025. 3. 00.() ~ 3. 00.() ※ 연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월부터 지원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회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학교로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세 자녀 이상 이 포함되어야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문의처: ○○○학교 000-0000

2025. . .

○○○○학교장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학교로 제출】

신청인 (보호자)	성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지원 학생 정보	학년	반	성명	생년월일	비고(기재요령) 해당 학교에 자녀 여럿이 재학중일 경우 함께 기재
지급 계좌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전화번호)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수집·이용목적	보유기간
- 신청인(성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다자녀가정학생지원	졸업후 5년
- 학생(학년, 반, 성명, 생년월일)		
- 계좌정보(예금주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다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금융결제원(EFT), 00은행(e교육금고)	다자녀가정학생 지원금 지급	보호자(예금주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졸업후 5년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좌이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아니오()

위와 같이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의 허위이거나 중복지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교육비 지원금 전액을 반납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5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 신청인(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확인서

20○○. ○. ○자로 전출하는 학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를 지원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반		번호		이름	
지원 내역					
지원 항목 금액					
신학기준비물	체험학습비	기숙사운영비	고교학비	지원 받지 않음	

※ 다자녀 교육비 지원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0 0 0학교장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시행 2023. 8. 3.] [전라남도조례 제5803호, 2023. 8.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가정의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19세 미만인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8.3.>
2. “교육비”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9.3.14, 2021.9.23.>
3. “수익자부담경비”란 입학금 및 수업료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신설 2021.9.23.>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적용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5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자녀 가정의 자녀수에 따라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3.14>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신설 2019.3.14>
- ③ 제2조제2호의 교육비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 ④ 그 밖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자와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8조(교육비 지원의 중단과 환수)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389호,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번	교육지원청	과명	연락처	비고
1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280-6616	
2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690-5533	
3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729-7782	
4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330-0179	
5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760-3333	
6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380-8142	
7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360-6650	
8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780-6645	
9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830-2062	
10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850-7133	
11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370-7174	
12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860-1224	
13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430-1543	
14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530-1142	
15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470-4149	
16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450-7042	
17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320-6617	
18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350-6642	
19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390-6136	
20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550-0532	
21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540-5155	
22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240-3643	